

4. 질의 및 답변

○ 문 : 지역보건법시행령 제2조제3항에 20인이내 심의위원회를 둔다 하였는데 15인 이내로 한 이유는

● 답 : 군단위는 시단위보다 규모가 적기때문에 15인이내로 구성하였음.

○ 문 : 안제2조에 위원회를 구성할 때 보건의로 전문가를 구성치 않는 이유는

● 답 : 보건의로 관련 기관에 보건의로 전문인력이 있으므로 이중으로 될 우려가 있어 구성하지 않았음.

5. 토 론 : 없음

6. 심사결과

○ 1997. 10. 9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